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7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0호, 2026.7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8월 24일

보건복지부장관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의 노-941 “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[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] Virtual Navigation Guided Bronchoscopy”란 다음에 노-945 “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[생검료 포함] Shape-sensing Robotic Assisted Bronchoscopy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
노-945	EZ945	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[생검료 포함] Shape-sensing Robotic Assisted Bronchoscopy 주.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, 말초 폐 병변 환자에게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병소의 위치 확인 및 조직검사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
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 <u>노-945</u> <u>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</u> <u>EZ945</u> <u>[생검료 포함]</u> <u>Shape-sensing Robotic Assisted</u> <u>Bronchoscopy</u> <u>주.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, 말</u> <u>초 폐 병변 환자에게 형상</u> <u>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을 활용</u> <u>하여 실시간으로 병소의 위치</u> <u>확인 및 조직검사 시행한</u> <u>경우 산정한다.</u>